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665

발의연월일: 2022. 9. 30.

발 의 자: 박주민·김상희·김승남

김용민 • 민병덕 • 박범계

박재호 · 서동용 · 서삼석

소병철 · 송갑석 · 신정훈

윤재갑 • 이형석 • 장철민

전재수 · 정성호 · 조승래

조오섭 • 진성준 • 황운하

의원(2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소상공인과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생계형 대출이 증가하였는데, 이에 더해 최근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대변되는 경제상황은 한계기업과 개인채무자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는 상황임.

한편, 우리나라의 유일한 도산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은 전문성과 신속성을 갖춘 사법서비스를 통해, 한계 채무자들의 빠른 경제 활동 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도산전문법원이 부재한 지방법원과의 실무상 격차가 발생하여 오히려 지방에 거주하는 채무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이에, 전국 고등법원 권역 지역에 회생법원을 확대하여 설치함으로 써 회생·파산분야에 있어서 사법서비스의 질을 고르게 향상시키고, 한계 채무자들이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것과 동시에 국가적으로도 사회·경제적 손실을 줄이는데 기여하고자 함.

한편, 각 고등법원 권역 지역에 회생법원이 설치되더라도 채무자가 서울회생법원에도 경합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채무자에게 사법서비스 이용의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제11항 신 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주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66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및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은 서울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판관할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 규정 시행 이후 신청한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및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재판관할) ① ~ ⑩ (생	제3조(재판관할) ① ~ ⑩ (현행
략)	과 같음)
<u><신 설></u>	①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생사
	건, 간이회생사건 및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은 서울회생
	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